

없이 신보증인을 정하여 서약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④ 보증인의 주소와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장 전 과

제21조 ① 전과는 여석이 있는 학과에 한하여 제2학년 초에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과대학(아동학과 제외), 공과대학(산업디자인학과 제외)의 각 학과 및 농과대학의 유전공학과에 대하여는 총입학 정원의 범위내에서 학과입학 정원의 10퍼센트까지 자연계열학과 학생의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전과 지원자는 전학년 소정학점을 취득하고 그 성적 평점평균이 3.00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③ 전과는 재학중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④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22조 전과는 해당 학과장의 승인을 얻은 자 가운데서 전입대학장의 상신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한다.

## 제9장 납 입 금

제23조 학생은 매학기초 등록시에 수업료 및 소정의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

제25조 납입한 금액은 과오납으로 인한 것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수업료 기타 납입금은 결석, 정학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하지 아니한다.

## 제10장 등 록

제27조 ① 학생은 매학기초 소정기일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의 절차는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마침으로써 완료된다.

③ 수강신청은 해당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으로 하고 소속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수강신청을 마친 수강과목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 수강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기일내에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11장 교과 및 이수

### 제1절 교육과정

제29조 ① 본 대학교의 교과는 교양과목, 전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30조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주 1시간씩 한 학기간 16주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체육 및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은 1주 2시간 이상 한 학기간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 제2절 수 업

제31조 매학기 개설할 교과목은 그 학기개강전에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32조 ① 매학기의 강의시간수는 제30조의 기준에 달하여야 한다.

② 결강으로 인한 부족시간수에 대하여는 보충수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항의 기준에 달하였을 때에 한하여 그 과목의 학점을 부여한다.

### 제3절 시험과 성적

제33조 시험은 전교과목에 대하여 매학기 정기시험으로서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 시험방법은 필기에 의한다. 다만 담당교수의 의견에 따라 구술, 논문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 ① 학생은 해당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여야 그 과목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있다.

②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예습·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성적평가 방법은 따로 이를 장할 수 있다.

제36조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험 실시일 전에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절차를 밟은 자는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으며 그 성적은 B(80~84점)를 초과할 수 없다.

제37조 학업성적은 등급으로 표시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다.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A <sup>+</sup>	95~100	4.5	C <sup>+</sup>	75~79	2.5
A	90~94	4.0	C	70~74	2.0
B <sup>+</sup>	85~89	3.5	D <sup>+</sup>	65~69	1.5
B	80~84	3.0	D	60~64	1.0
			F	0~59	0.0

제 4 절 이수의 인정

제38조 ① 학생은 매학기 18학점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0학점을 초과 이수할 수 없다. 다만, 법과대학, 약학대학, 사범대학 학생은 21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6 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23학점까지 초과이수할 수 있다. 다만, 법과대학, 약학대학, 사범대학 학생의 경우에는 24학점까지 초과이수할 수 있다.

제39조 ① 재학중 자과의 어느 특정학과의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는 그것을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② 재학중 어느 특정학과를 복수전공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제 2 전공으로 인정한다. 다만 복수전공의 이수학점은 해당학과의 전공 이수학점과 동일하며 최소한 2학기 이상을 연장 이수하여야 한다.

③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40조 ① 제37조에 규정한 등급 D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졸업, 진급에 관한 사정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업성적이 부진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할 수 있으며, 연속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한다.

1. 학업성적 평점 평균이 1.50 미만인 자
2. 직전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자(복학, 재입학, 유급자 포함) 중 학업성적 평점 평균이 2.00 미만인 자
3. 수강신청 미필자

④ 학업성적이 부진한 자에게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원하는 자에게 유급시킬 수 있다.

⑤ 유급은 학년 단위로 1회에 한한다.

⑥ 유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다만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42조 ① 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원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케 한다.

② 편입학생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43조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제 1 학년 수료는 35학점 이상(다만, 법과대학, 약학대학, 사범대학은 37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 2 학년 수료는 70학점 이상(다만, 법과대학, 약학대학, 사범대학은 75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 3 학년 수료는 105학점 이상(다만, 법과대학, 약학대학, 사범대학은 113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 4 학년 수료는 140학점 이상(다만, 법과대학, 약학대학, 사범대학은 15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44조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따로 정한 규정이 없는 한 140학점(법과대학·약학대학·사범대학은 15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졸업에 필요한 성적은 전학년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달하여야 한다.

③ 학위는 학년말에 수여한다. 다만, 졸업요건에 달하는 자가 추가로 생길 때에는 학기말에도 학위수여를 할 수 있다.

제45조 졸업예정자는 최종학기 소정기일내에 졸업논문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제출이 부적당한 학과에 대하여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6조 ① 졸업논문 제출 2개월기전에 졸업논문 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졸업 최종학년초에 배정한다.

제47조 졸업논문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48조 ①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심사에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여 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한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② 졸업을 인정된 자에게는 별도 학위수여규정에 의하여 별표 2와 같이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제 2 전공을 이수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 1, 2 전공을 이수완료하였을 때 동시에 졸업증서 및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2. 학칙시행세칙

**제 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계열별 입학생의 학과결정)** ① 학칙 제 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열별로 입학한자는 제 2학기 중에 별지 제 1호 서식의 전공학과 지망원서를 보호자 연서로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공학과의 결정은 제 3학기 등록 전에 따로 정하는 배정 기준에 의한다.

**제 3조(평점평균의 산출)** 학칙 제 6조 제 2항 및 제 21조 제 2항의 평점평균은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신청학점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다만, 학칙 제 44조 제 2항의 평점평균은 평점합계를 취득학점 합계로 나누는 방식에 의한다.

**제 4조(조기졸업)** ① 학칙 제 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졸업대상자는 6학기까지 120학점이상을 이수하고, 성적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법과대학·약학대학·사범대학의 경우에는 13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 한다.

② 제 1항의 조건을 갖춘 자 가운데서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7학기초 소정 기간내에 별지 제 2호 서식의 조기졸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성적 총평점평균이 4.0이상이고 제 11조의 기준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조기 졸업을 인정한다.

**제 5조(계절학기)** ① 학칙 제 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학기는 하계방학중에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절학기에 수강할 수 있는 자는 3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에 한한다.

③ 매 계절학기의 취득학점은 학칙 제 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6학점의 범위내로 한다.

**제 6조(학점초과이수)** 학칙 제 3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초과이수할 수 있는 자는 제 1학년 제 1학기부터 계속하여 매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이 되는 자에 한한다.

**제 7조(부전공 이수)** ① 학칙 제 3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 1학년 제 2기말 소정기간내에 별지 제 3호 서식의 부전공이수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대학·생활과학대학·체육대학의 각 학과, 공과대학 산업디자인학과 및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를 부전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 1항의 부전공이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부전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부전공 교과목은 제 2학년 제 1학기부터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조(부전공 이수학점)** ① 부전공하는 자는 따로 정한 규정이 없는 한 부전공학과의 전공과목 가운데서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이수학점에는 따로 지정한 부전공필수과목 6학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전공필수과목이 자과의 전공과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부전공필수과목의 학점만큼 부전공학과의 다른 전공과목을 더 이수하여야 한다.

**제 9조(복수전공의 자격등)** ① 학칙 제 3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전공을 하고자 하는 자는 6학기까지 11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예·체능 계열학과 학생과 학군사관후보생은 복수전공할 수 없다.

② 복수전공하고자 하는 자는 7학기초 소정기간내에 별지 제 4호 서식의 복수전공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약학대학·생활과학대학·체육대학의 각학과, 공과대학 산업디자인학과 및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를 제 2전공으로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범대학 재학생 외에는 사범대학 각 학과를 제 2전공으로 할 수 없다.

**제 10조(복수전공자의 졸업학점 등)** ① 복수전공한 자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7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복수전공하는 자는 7학기부터 제 2전공학과의 교육과정표에 정한 전공과목을 이수하되, 소정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③ 부전공한 학과를 제 2전공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이수한 부전공학점을 제 2전공의 이수학점으로 대체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전공 자격은 소멸된다.

제11조(졸업사정 기준) 학칙 제40조 제2항에 따른 졸업사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칙 제44조 제1항 또는 이 세칙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1989학년도전 법과대학 입학생 및 1988학년도전 사범대학 입학생 가운데서 복학 또는 재입학한 자는 별표 1에, 1989학년도전 약학대학 입학생 가운데서 복학 또는 재입학한 자는 별표 2에 각각 규정된 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졸업학점은 교육과정표에 규정된 해당학과의 교과목이수구분별 소정학점을 모두 이수한 것이어야 한다.
3. 8회 이상 등록하고 이수과목의 총평점평균이 2.0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조기졸업자는 7회, 복수전공자는 10회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4. 졸업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2조(학사경고자에 대한 조치) ① 학칙 제40조 제3항에 의한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게는 다음학기의 수강학점을 15학점으로 제한한다. 다만, 유급자는 유급후 첫 학기에 한하여 이를 예외로 한다.

② 학사경고는 학과장·학장 및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학적부에 이를 기재한다.

제13조(유급) ① 학칙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급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개시전 소정기간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유급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급한 자는 다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② 유급한 자의 성적증 유급학년에 취득한 성적은 원칙적으로 이를 무효로 한다. 다만, 교육실습학점은 이를 예외로 한다.

제14조(졸업논문의 제출) ① 학칙 제45조의 졸업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11월말(후기졸업자는 5월말)까지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은 개인연구를 원칙으로 하며, 학생 상호간에 연구내용이 중복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5조(논문의 대치) ① 학칙 제45조 단서에 따라 논문 제출이 부적당한 학과의 논문은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또는 졸업종합시험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논문대치학과 학생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논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실기발표의 경우에는 발표일시·장소·내용 등을 공고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실기발표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능력이 판별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제16조(논문작성계획서) 학칙 제46조 제1항의 졸업논문작성계획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며, 논문제출 2개월기전 11월 20일(후기졸업자는 5월 20일)까지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논문지도교수) ① 학칙 제46조의 논문지도교수는 학과소속 전임교원 가운데서 학과장이 위촉하며, 그 시기는 7학기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작성의 모든 과정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18조(논문심사) ① 논문심사는 학과장이 위촉하는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이를 행하며, 논문지도교수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② 논문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며, 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한다.

③ 학과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논문심사결과를 학장을 거쳐 12월 20일(후기졸업예정자는 6월 20일)까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논문심사결과의 처리) ① 심사에 합격한 논문의 제목은 학적부에 기재한다.

② 논문심사에 합격하였으나 제11조의 기준에 미달하여 해당학기에 졸업하지 못한 학생의 논문합격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복무기간은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논문심사에 불합격하고 다른 졸업자격요건을 구비한 자에게는 수료증만 수여하고 논문을 다시 제출하여 합격하였을때 학위기는 수여한다. 다만, 학위기 수여시기는 논문제출학기 졸업일로 한다.

④ 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첫번째 논문제출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논문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은 논문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학사에 관한 내규

#### 1. 교과목의 구분

- ①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 ② 교양과목은 필수과목인 기본교양과목과 선택과목인 계열교양과목으로 구분한다.
- ③ 전공과목은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 ④ 교직과목이란 교직 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학생 중 제 2학년초에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유치원 2급 정교사(아동학과) 또는 사서교사(문헌정보학과)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직 수강생으로 선정된 자가 제2학년 내지 제4학년에 이수하는 과목을 말한다.  
다만 사범대학 각 학과의 교직 과목은 그 학과 소정의 필수과목을 말한다.
- ⑤ 교과목의 이수 구분과 이에 따른 학수 번호는 학과별 교육 과정표와 같다.

#### 2. 교과목의 이수

- ① (교양과목) 교양과목의 이수학점은 총 42학점(단, 법과대·사범대·약학대는 45학점, 체육대는 50학점, 이과대·공과대는 53학점) 이상으로 하며, 각 대학별 이수학점에 미달되는 학점은 계열교양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 ② (계열교양과목) 계열교양과목은 학과에서 지정한 교과목과 그외의 과목을 교양과목이수 학점에 맞추어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전공과목) 전공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선택 과목은 학과별 교과 과정표에 전공선택과목으로 표시된 교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규정된 최저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일반선택과목) 일반선택과목은 소속학과 교육 과정표에 제시된 전공선택과목중 최저 이수학점을 초과한 과목과 타학과 전공과목 및 학과 교양이수학점을 초과한 계열과목중에서 임의로 선택 이수할 수 있다.
- ⑤ (교직과목) 교직과목의 이수는 교직 과정 이수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 ⑥ (부전공과목) 부전공 학과의 선택 및 과목의 이수는 학칙 시행 세칙 7조 및 제 8조에 따른다.

- ⑦ (복수전공과목) 복수전공학과와 선택 및 과목의 이수는 학칙 시행 세칙 제 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다만 부전공 과정을 이수하고 다시 그 과정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자는 기이수한 부전공 학점을 복수전공 이수학점으로 대체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전공 자격은 소멸된다.
- ⑧ (교직 부전공과목) 교육학과, 한문교육과 및 역사교육과 재학생으로서 교직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이 과정에서 이수한 부전공과목이 제 ⑥항의 부전공과목과 동일한 경우에는 학칙 제39조 제 1항에 규정된 부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3. 수강신청

- ① (수강신청의 절차) 재학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소속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단말기를 통해 직접 수강신청을 해야한다.
- ② (수강신청 학점)
  - (1) 매 학기 18학점을 수강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20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과대학, 약학대학, 사범대학 학생은 다음과 같다.  
법과대학·약학대학: 21학점(1989학년도 제 1학년부터 적용)  
사범대학: 21학점(1988학년도 제 1학년부터 적용)
  - (2) (수강신청과목 변경 및 철회)
    - (1) 수강신청과목 변경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매 학기초 지정된 기간 내에 단말기를 통하여 직접 변경을 해야한다.
    - (2) 수강신청과목 철회  
가.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간내에 담당교수, 학과장 및 학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철회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철회후 총 신청 학점이 최소 14학점(졸업학기는 제한없음) 이상이어야 한다.  
다. 철회한 과목은 성적 평가에서 제외한다.

- ④ (시간 중복 과목) 수업 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 신청할 수 없으며, 이수하여도 그 성적은 무효가 된다.
- ⑤ (수강반 지정) 동일과목이라도 반드시 지정된 반에서 수강하여야 한다.
- ⑥ (선수강 금지) 소속학과 상급 학년의 전공과목은 수강할 수 없다. 다만, 학칙 제 6조 제 2항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고자 하는 자가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⑦ (수강신청서 미제출자에 대한 처리) 지정된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학기 교과목의 수강과 시험에 응할 자격이 없으며,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2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학사경고를 한다.

#### 4. 추가시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시험 실시일전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는 기간에 추가시험에 응하여야 한다.

#### 5. 성적 평가

- ① (평가 방법)
  - 학업 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표시되 시험 성적, 출석 상황, 과제 보고서 및 평소의 학습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 ② (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적은 취소한다.
  - (1) 사무 착오에 의한 성적
  - (2) 정학 이상의 징계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2/3이상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의 학기 성적의 전부(교육실습 성적은 제외)
  - (3) 출석 미달과목의 성적
  - (4) 소정학점을 초과하여 얻은 학점
  - (5)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
  - (6) 장기 휴학(군입대 인정학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및 자퇴자에게 주어진 성적(교육실습 성적은 제외)
  - (7) 시험 부정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과목의 성적
  - (8) 취소한 교과목은 재수강 할 수 있으며 (2), (3), (7)의 성적은 취소후 F로 처리한다.
- ③ (성적 이의 신청)

- (1) 성적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학기 학업성적표를 받은 후 소정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 교수, 강사에게 이의신청을 한다.
- (2) 담당교수, 강사는 학생의 이의가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소정 서식의 성적 정정원(정정 이유, 답안지 등 증빙자료 첨부)을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성적 평가자료 보존)
  - 출석부, 과제보고서, 실험실습보고서, 시험답안지 등의 성적 평가자료와 교수보관용 성적기록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1년간 보관한 후 폐기한다.

#### 6. 졸업논문제 시행 및 관리

- ①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의 평가)
  - (1)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 및 실기발표의 평가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가"로 평점한다. 판정에 있어서 2인의 평점이 가·부 상충인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3인 이상인 때에는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판정한다.
    - 다만, 실기발표의 경우 발표 작품 종수가 2종 이상인 때에는 작품당 배점을 100점으로 하고 총 배점의 60퍼센트 이상을 "가"로 평점한다.
  - (2) 졸업논문과 논문심사에 관련된 서류는 학과장이 1년간 보관한 후 폐기한다.
- ② (졸업 종합시험관리 및 평가) 졸업 종합시험은 해당 학과장 및 학장이 다음 사항을 관장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이의 판정은 학과장, 학장 및 학과교수 전원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과목당 배점은 100점으로 하고 총점의 60% 이상을 합격으로 판정한다.
  - (1) 응시자격 확정
  - (2) 시험일자, 시험과목 등 게시
  - (3) 출제위원 위촉
  - (4) 채점위원 위촉
  - (5) 채점방법 결정(봉인 채점방법을 채택 함)
  - (6) 합격자 사정(소정 판정표에 의거 사정 함)
  - (7) 졸업 종합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소정 서식)
  - (8) 시험지, 기타 시험관계 서류는 1년간 보관한 후 폐기
- ③ (졸업논문 작성)
  - (1) 논문 체제: 서식은 횡서로 하고 용지는 200자 원고지 또는 16절지로 한다.
  - (2) 작성 요령
    - (가) 표지는 소정 용지로 한다.